#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753

발의연월일: 2025. 6. 12.

발 의 자: 박성훈・박충권・고동진

김성원 • 이상휘 • 정연욱

조배숙 • 한지아 • 안상훈

김민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제재 처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신고 접수 및 적발 건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, 현행 조사 및 후속 처분의 구조가 불공정행위 예방·근절로 연결되는 효과는 여전히 부 족한 상황임.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「대외무역법」 등에서는 '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', '완제품 납품' 등 직접 생산을 위반한 자와 '원산지 위반'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지만, 현행법에는 이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.

이에 공정조달 시장 구축과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 및 대처를 위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5조 등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를 제37조로 하고,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5조(벌칙) ① 제21조제1항제2호,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② 제21조제1항제1호,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36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5조(벌칙) ① 제21조제1항제2
	호,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
	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
	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
	<u>한다.</u>
	② 제21조제1항제1호, 제5호 또
	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
	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
	하의 벌금에 처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36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
	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
	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
	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
	여 제35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
	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
	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
	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
	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
	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
	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
	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
	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u>제35조</u> (과태료) (생 략)	<u>제37조</u> (과태료) (현행 제35조와

같음)